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년 3월 9일 대통령기록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던 업무사항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정비하고, 대통령기록물 이관·관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 변경(안 제2조제1항 신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기록물을 전담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추천하도록 함.

나. 이관시기 연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강화(안 제6조제3항 신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활용 목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 이관시기를 연장 요청할 경우 이관 연장을 요청한 기관이 연장 기록물을 목록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대통령선물의 관리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법 제2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대통령선물에 대해 등록정보를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생산·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선물 중 동·식물 등은 「공직자윤리법」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협의 권한 조정(안 제6조의4 신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을 일반적인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조정함.

마. 개인기록물 수집 보상 평가방법 변경(안 제15조 개정)

타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말도록 하고 있어, “전문 감정평가인”을 “전문 감정평가기관”으로 변경함.

바. 오기 수정(안 제10조제4항제4호 개정)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8조의2”로 수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기록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이관시기 연장 기록물을 목록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고, 연장시기 만료 시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대통령선물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식물 등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6조의4(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8조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감정평가인 2명 이상에게”를 “감정평가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전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를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신설> ① ~ ⑦ (생략)	제2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② ~ ⑧ (현행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①·② (생략) <신설>	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이관시기 연장 기록물을 목록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고, 연장시기 만료시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신설>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의2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선물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

<신설>	산·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식물 등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6조의4(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생략)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1. ~ 3. (생략)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5. ~ 7. (생략) ⑤ (생략)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8조의2----- ----- 5. ~ 7.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이 수집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인 2명 이상에게 가격 산정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통령 또는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전문 감정평가인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① ----- ----- ----- ----- ----- <u>감정평가기관에</u> ----- ----- ----- <u><후단 삭제></u>
②보상액은 각 전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u>전문 감정평가기관이</u> <u>평가한 금액으로 하되</u> ----- ----- -----.
③제1항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인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③----- <u>감정평가</u> <u>기관</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	
연 락 처	(044) 211 - 2216